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96

2014년 12월 17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4년 11월 7일, 최영수 의원 외 31명

나. 회부일자 : 2014년 11월 14일

다. 상정일자 : 제257회 서울특별시의회 제6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14년 12월 1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 설명자: 최영수 의원)

가. 제안이유

○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음용률 향상을 위한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음용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학교 및 공공기관 등에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하고 있지만, 아리수 음수대 설치, 청소 등 유지관리 및 보수·교체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

따라서 아리수 음수대 설치, 수질검사와 청소 등 위생관리 및 고장 등 유지관리(교체 포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수돗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알려야할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아리수 음수대 설치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설치된 아리수 음수대의 유지관리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도록 함(안 제5조)

○ 아리수 음수대 설치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아리수 음수대 귀속 및 설치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아리수 음수대 수질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설치·운영 중인 아리수 음수대의 위생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해당부서와 협의

다. 기　　타

(1) 입법예고(2014.11.18 ~ 11.25) 결과 : 의견 없음

(2)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 영 배)

가. 개요

○ 현행 학교, 공공기관 및 공원 등을 대상으로 아리수 음수대(이하 “음수대”)를 설치하고 있지만, 음수대의 청소 등 유지관리와 보수·교체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설치된 음수대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바, 음수대의 설치와 더불어 수질검사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1) 음수대 설치를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안 제4조)

○ 시장은 학교, 공공기관 및 보행자들이 많은 도심의 주요 지점을 대상으로 음수대의 설치와 교체 그리고 유지관리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설치된 음수대에 대한 수질검사와 유지관리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2) 음수대 유지관리에 대한 실태조사(안 제5조)

○ 시장은 설치된 음수대의 유지관리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 음수대의 유지관리에 대한 실태 조사는 4, 6, 10, 12월 중에 실시되고 있으며, 이 조사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실질적인 음수대 관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 음수대의 설치 및 귀속(안 제6조, 제7조)

○ 안 제6조에서는 학교, 공공기관 및 보행자들이 많은 도심의 주요 지점 등 음수대 설치 대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2006년 음수대 설치 이후 2014년 11월 현재 학교 및 공공기관 등 1,623개소에 18,069대의 음수대가 설치되어 사용 중에 있음.

음수대 설치 대상[1] 중 미설치 학교(414개 학교) 및 공공기관(37개 기관) 등에 대해서는 연차별 추진계획에 의거 음수대를 설치하고, 특히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음수대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안 제7조에서는 설치된 음수대를 해당 기관에 관리 전환하여 소유 및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도록 하고 있음.

4) 음수대의 수질검사(안 제8조)

○ 현행 음수대 수질검사는 분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의 경우에는 방학 기간을 고려하여 3, 5, 9, 11월에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수질검사는 pH, 탁도, 잔류염소, 철, 구리 등 5개 항목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데, 음수대 수질검사 실시 이후 현재까지 수질기준이 초과된 사례는 없었고 수질검사 시 음수대 위생관리와 정상작동 여부 등도 병행하여 점검하고 있음.

---

1) 초·중·고등학교 1,341개 학교, 공공기관 578개소

5) 음수대의 관리(안 제9조)

○ 현행 음수대의 청소 등 위생관리 특히, 고장 등 유지관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음수대 고장에 따른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실제 금년도 상반기에 실시한 음수대 관리 실태조사('14.1.10~4.30) 결과를 보면, 경미한 또는 중대한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사용을 못하고 있는 음수대가 169대, 고장 및 폐기처분 등의 사유로 철거된 음수대도 430대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동 조례안과 같이 음수대의 위생관리와 유지관리는 기본적으로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는 해당 기관에서 하도록 하고, 다만 냉·온 및 수압 기능을 위한 장치 이상 등 중대한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에서 교체, 수리하거나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음수대가 설치된 해당 기관에서 수리비용 부담으로 음수대를 임의로 철거하거나 방치하는 사례는 없어질 것으로 보임.

○ 또한, 현행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1조제1항제6호[2]에 따라 음수대를 설치, 사용 중인 학교에 대해서는 수도요금을 20% 감면해 주고 있고, 청소 등 위생관리와 고장 및 철거 등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수도요금 감면을 철회[3]하고 있지만, 수도요금 감면 철회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동 조례안에 명시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2) 제31조제1항제6호 "정수기를 철거하고 아리수 직결 냉온 음수대를 사용하여 수돗물을 마시는 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3) 2014년 6월 현재 음수대 관리소홀, 정수기 사용 등의 사유로 312개 학교에 대해 수도요금 감면을 철회하고 있음.

6) 종합의견

○ 2014년말 기준 18,069대의 음수대가 설치되어 사용 중에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 지출은 총 514억 5천4백만원에 달하고 있음.

이렇듯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음수대의 설치, 수질검사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본부장 방침에 의해 시행되고 있고 그 방침도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되고 있으며, 특히 중대한 고장 발생 시 수리 주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당 기관에서는 비용 부담 등의 사유로 고장난 음수대를 방치하거나 임의적으로 철거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되고 있는 등 음수대 사후 관리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동 조례안과 같이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음수대를 설치·교체하고 수질검사 및 유지관리에 대한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여 설치된 음수대를 최적의 상태로 관리함으로써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음용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음용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 및 공공기관 등의 아리수 음수대 설치와 청소 등 위생관리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리수 음수대(이하 “음수대”라 한다)”란 별도의 여과 등의 처리 없이 직결급수된 수돗물이 나오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2. “직결급수”란 아리수정수센터에서 생산된 수돗물을 건축물의 물탱크시설 등을 통하지 않고 직접 음수대까지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돗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알려야 할 책무가 있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음수대 설치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6조에 따른 음수대 설치, 교체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설치된 음수대에 대한 수질검사 및 유지관리(교체 포함)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설치된 음수대의 유지관리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음수대 설치를 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교육시설
2. 공공기관의 민원실 또는 복도 등 공용 공간
3. 공원, 광장, 차 없는 거리 등 보행자들이 많은 도심의 주요 지점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음수대 설치를 위하여 시장은 음수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건물의 내·외부 배관을 확인하고 노후 및 직결급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별도의 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귀속 및 비용부담)

①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음수대의 소유는 설치된 기관으로 한다. 이때 설치기관은 별지 1호 서식의 물품관리전환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6조에 따른 음수대 설치를 위한 비용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예산으로 한다.

제8조(수질검사) 시장은 설치·운영 중인 음수대에 대하여 제4조제3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 ① 음수대의 청소 등 위생관리 및 고장 등 유지관리에 대한 조치는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는 기관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설치된 음수대 중에서 냉·온 기능, 수압 기능을 위한 장치 이상 등 중대한 고장이 발생하여 음수대로서의 기능이 어렵다

고 판단되면 시장은 교체, 수리 및 비용지원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③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음수대 중 내용연수가 경과된 음수대에 대하여는 연차별 계획에 따른 교체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음수대의 청소 등 위생관리, 고장 및 철거 등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을 철회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